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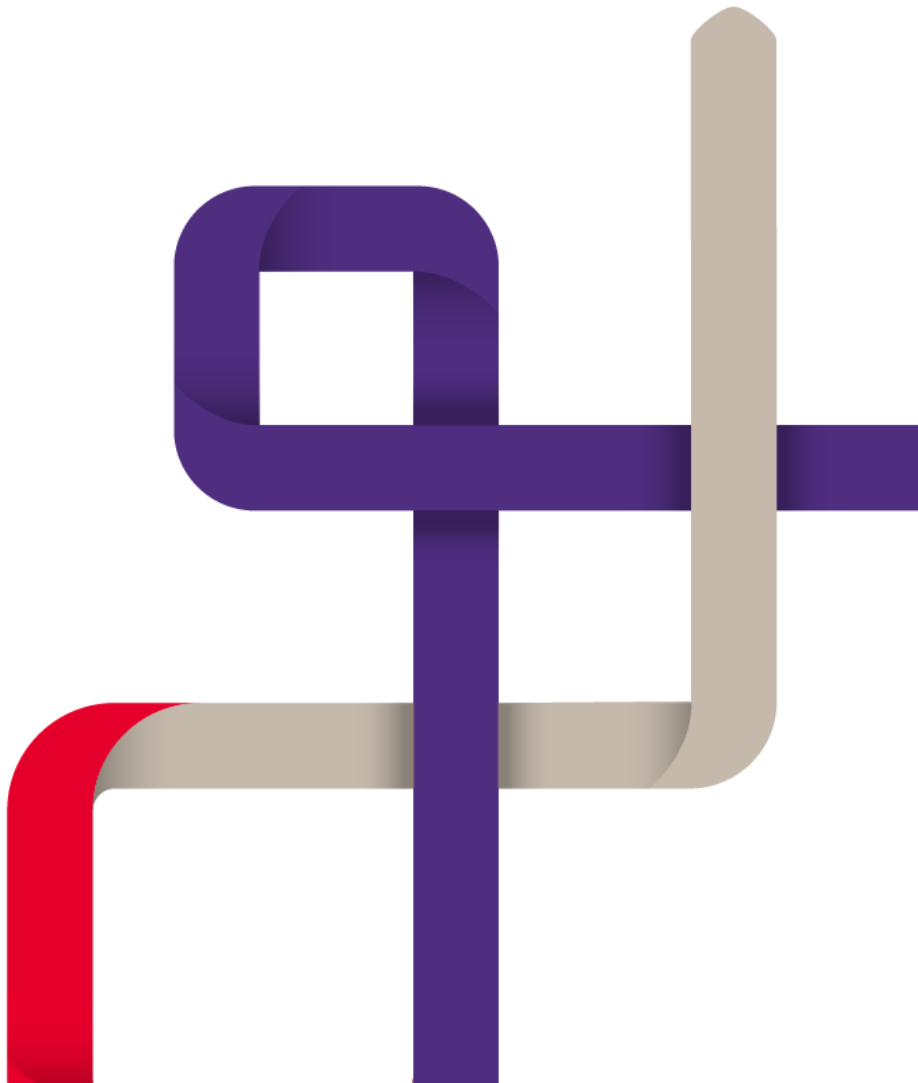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조세에 대한 법규 각 新문서와 일부 중요정책업의 데이트

2018년 11월

2호





콘텐츠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최근 일부 새로운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 다음:

1. 의료보험제도를 2018/12/01일부터의 규정보충에 대한 의령서 제146/2018/NĐ-CP호.
2. 노동법전의 시행안내에 대한 일부 규정변경의 의령서 제148/2018/NĐ-CP 호.
3. 전자영수증을 사용할때 상품출처를 증명하는 종이영수증공급의 면제.
4. 국내기업은 제출구역내의 사무실을 임대할수 있다.
5. 임직원들에게 증정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오직 평균월급의 1 개월 어치를 불과하면 공제비용으로 감안한다.
6. 고객에게 관광여행편을 증정하는 항목에 대한 세금.
7. 수출입물의 추가로 지정하는 세금액에 대한 VAT 및 법인소득세.
8. 자연피해 예방, 방지자금을 1년에 한번만 납금한다.
9. 연결거래 있는 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 비용 공제된다.

1. 의료보험제도를

2018/12/01일부터의 규정보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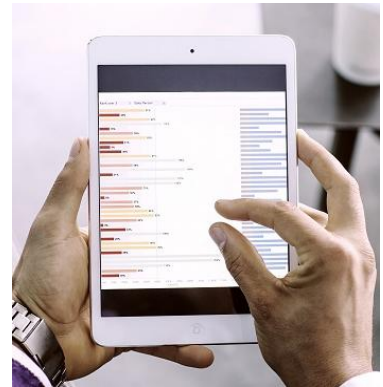
의령서 제146/2018/ND-CP호.

2018/10/17일, 정부는 의령 제146/2018/ND-CP호(“의령146”)를 발표해서 의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 규정과 안내방법을 소개해준다. 본 의령발효는 2018/12/01일 부터 있다. 본 의령은 2014/11/15일에 의령 제105/2014/ND-CP호를 대신해주고 보건부의 연합 통지서 41/2014/TTLT-BYT-BTC호의 2014/11/24일에 발표, 통지16/2015/TTLT-BYT-BTC 의 2015/7/02일에 발급과 다른 법규 일부조항 들을 삭제한다.

146의령서의 주목된 일부내용은 다음 같다:

- 입원치료중에 의료보험카드의 만효인 경우 관련
의료보험카드 있는 환자의 입원중에 카트기한 만효의 경우에 그환자가 퇴원 때까지 수혜 범위내 병진달,치료비용과 해당된 기준으로 결재되고 카트기간의 만효날부터 15일 내 불과 이다. 사회보험조직은 환자의 카트발급 후 기한 연기를 치료병원에 진행해 줄수 있는 책임이 있다.
- 병진달, 치료의 병원을 옮길때에 의료보험기준의 관련

의령146 의 주의깊은 점은 의료보험의 수혜기준이다. 환자는 보험카드소지로지정Line와 맞지않는 병원에 스스로 가서 진달, 치료를 받고 그후 접수 병원이 그 환자를 다른 치료소에 보내면 의료보험자금이 보건법의 제22조3항에 따른 틀린 Line의 수혜기준을 받게 된다.



2.노동계약을 불법으로 중지할때 배상근거로 된 봉급 관련

정부는 최근에 의료보험제도를 2018/12/01일 부터의 노동법전의 시행안내와 상세 규정을 하는 의령서 제05/2015/ND-CP호에 대한 보충을 해준의령서 제148/ 2018/ ND-CP호 (의령 148)를 2018/19/24일에 발표한다. 의령 148은 2018/12/15일부터 발효한다.

의령서 제 148호엔 중요 주목된 일부 변경들이 다음:

- 퇴직, 실직의 보조금을 계산하기위한 근무시간 관련
현행규정을 따르면 노동자의 근무기간은 노동고용자의 실적보조금의 그전에 지급(있는 경우)을 받았으면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서 그후의 퇴직, 실직의 지원금을 계산해준 근 거로 감안되던 148의령발효부터 그런 규정을 변경한다. 그에 따라 그전의 실적보조금을 받은 경력시간이후의 퇴직, 실직의 지원금을 계산되지않다.

그 외에, 고용자의 근무를 하기위한 노동자의 수습, 업무 공부, 연습의 시간을 의령 148 발효부터 퇴직,실직의 보조금을 계산할때에 노동자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의령 148부터 퇴직보조금을 계산된 새로운 시간이 있다. 예, 노동 사고, 업종 병가시에 치료받고 노동기능을 회복해준 실직기간, 유봉급의 국민의무를 집행 하기위한 실직기간 등. 등이다.

- 노동계약 종료시에 각 항목의 결재 시간 기한
의령148도 노동계약 종료시에 노동고용자와 근무자의 권익에 관련된 각 항목의 결재 시간을 정해준 규정보충을 한다. 그에 따라 노동계약 종료일부터 근무일의 7일내에 노동 고용자와 근로자는 매측의 권익에 관련된 각 항목을 충분적 결재하는 책임이 있다. 그전에 이내용은 오직 고용자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특별 경우에 결재기한이 연기되 지 만 노동계약종료 시부터 30일내에 불과한다.

➤ 노동계약을 서명하는 살권자의 관련

의령 148 엔 그전의 4개대상을 대신한 고용자측의 5개대상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역할담당을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법규에 따른 대표인으로 위임 법인자격 없는 가족성원들, 합작사, 기타 조직인; 혹은 기업,합작사의 정관에 규정된 법규의 대표인; 아니면 노동계약체결의 문서 로 위임된 법규의 법인자격 소지에 대한 한 기관, 조직 선두인들도 노동계약 서명도 실권 이 있다.



➤ 매년 휴무일, 명절날, 유급 사유휴무일의 봉급 관련

그전의 규정을 따르면 매년 휴식일봉급, 경력으로 매년 증가된 휴식일, 명절날, 유급용 사유휴무의 봉급을 계산한 근거는 노동계약서에 명기된 인접 전월의 봉급이면 의령서 148발효부터 휴식일의 봉급계산이 노동계약에 따른 봉급기준으로 변경된다.

➤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중지할때 배상근거로 된 봉급 관련

의령 148에도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중지할때 배상근거로 된 봉급의 규정을 보충한 다.

그에 따르면 노동고용자나 노동자가 단독으로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중지할 시점의 노동계약의 봉급이다.

3.전자영수증을 사용할때

상품출처를 증명하는 종이영수증 공급의 면제.

최근 2018/10/18일에 세무총국은 문서 4049/TCT-CS호를 발표하여 전자영수증에 대한 일부 항목을 안내해 준다.

문서의 안내를 따르면

상품판매자는 전자영수를

종이영수증으로 바뀌서 통지서 제

32/2011/TT-BTC호의 12조규정에

따른 유통과정의 유형상품의

출처를 증명해준다. 그러나,

바권작업을 오직 한번만 진행되고

바권 영수증상에 공급자의

대표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

된다.

2018/11/01일부터 의령

119/2018/ND-CP호의 29항에

새규정을 따라 바권 작업이

상품의 출처를 증명해준 것을

삭제된다. 그에 따라,

시장유통상품을 검사할때

전자영수 증 사용경우에 대한

검사, 확인기관들이

전자online상에 스스로 세무소의

정보 검토 를 해야하고

종이영수증의 공급을 요구하지

않다. 불가항적 사고 혹은

자연피해로 Internet 검토에서

영향을 받으면 상품운송자가

전자영수부터 종이 영수로 바권것

(사본 이나 판매자의 서명, 도장 불

필요됨), 있으면 검사, 사찰 기관에

제출해줄수 있다.

4.국내기업은 제출구역내의 사무실을 임대할수 있다.

최근의 2018/10/19일에

세관총국은 문서 6134/TCHQ-

GSQL호를 발표해서 제출

구역내의 지정사무실의 부지를

임대하는 안내를 한다.

세관 총국에 따라, 국내기업은

제출구내 사무실을 임대해서

기업 혹은 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투자법규,의령서

제 118/2015/ND-CP 호 및 각

안내 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된 사무실에 설비, 기기를

가져오기 전에 국내기업이 다음

요구들을 집행해야 한다:

- ✓ 제출기업을 관리하는 세관과 같이 임대사무실의 장소를 검사해서 제출기업의 사무실과 격리된 요구를 보장하고 임대장소에 출입직원을 검토 카메라 시스템; 출입구 검사 카메라(보관 및 정보검토의 가능) 시스템들이 제출구를 관리하는 세관의 online와 연결할 수 있다.
- ✓ 제출구에 가져온 물건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그 리스트를 국내기업, 장소 임대해준 제출기업, 세관지국의 확인 있음) 서버, 사무실용 PC 등 IT시스템 설치목적으로 한다. 활동 과정에 물건 출입, 교체의 발생이 있으면 관리 세관 지국에 통보해준다.

- ✓ 각 기업사이 자산 양도가 있는 경우, 법규에 따른 세관과 신고한다.

5. 임직원들에게 준 증정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오직 평균월급의 1개월 어치를 불과하면 공제비용으로 감안한다.

- ✓ 최근에 세총국은 문서 4003/TCT-CS를 2018/10/17일에 발표해서 복리후생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임직원들에게 증정 상품을 구입하는 세무정책을 반영한다.



이런 문서에 따라, 기업은 외부의 상품을 복리후생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입해서 간부, 임직원에게 추석, 구정명절의 증정품으로의 발생 비용을 오직 규정의 세금계산년도 중 실제 평균월급 1개월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의 소득과세를 확정할 때 공제비로 본다. 동시에 기업도 공제된 비용으로 계산된 비용과 해당된 입구VAT의 공제로 하게 된다. 기업은 임원들에게 증정품을 준 때 법규 따른 영수증 작성을 해야 한다.



6. 고객에게 관광여행편을 증정하는 항목에 대한 세금.
 2018/06/12일에 HỒ Chí Minh City 세무국은 문서 5509/CT-TTHT호를 발표해서 영업개인에게 소득관련 지급항목에 대한 세금 정책을 소개한다. 그런 문서를 따라 기업은 상공청과 신고된 판촉 프로그램으로 상품구매의 금액 기준을 달성할 때에 여행으로 증정해준 경우엔 그런 여행과 해당된 비용항목이 기업의 생산, 영업활동을 복무해준다. 그런 항목은 합법영수증, 증빙(영수증의 가치가 2000만동 이상 경우에 현금결재로 하지 않은 영수증 있음)이 있으면 조세부담소득을 정할 때 감안된다. 개별으로 개인영업의 가족인 고객경우에 기업이 조직된 여행에 참가하지 않고 여행 금기준과 해당된 금액을 지급해준 항목이 개인소득과세에 속한다. 기업은 “매출액 달성 고객지원” 항목을 지급하고 공제 및 1% 개인소득세를 개인사업자에게 대신으로 납금 한다.

**7.수출입물의 추가로 지정하는
세금액에 대한 VAT 및
법인소득세.**

2018/08/02일에 Hà Nội
세무서는 문서 54152/CT-
TTHT호를 발표해서
수입품에 대한 추가로 증가된
지정세금을 처리해준 조치를
한다.

이런 문서에 따라, 기업이
세금신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세관기관의 세금지정
결정으로 수입품의 수입세금과
입구 VAT의 발생을 가져오지만
세금장날, 세불성실 신고에
속하지않은 경우들이
조세법규에 따르면

- ✓ VAT 관련: 기업은 법규에 따른 VAT공제에 대한 조건 만족되면 세관기관의 세금 지정결정에 따른 납세된 전부 입구 VAT의 신고, 공제된다;
- ✓ 수입세금 관련: 기업은 세관의 지정해준 결정에 따라 납세한 세금액이 법규를 보장되면 법인소득세결재시에 공제비용으로 감안된다.

그러나, 행정패널티 금액 (수입품의 세계금산가치에 합된 항목의 부족신고, 상품Code과 세율의 잘못 신고원인으로 납세금의 부족결과를 가짐)과 지연납세금 (있으면)은 법인과세소득 계산시 합리비용으로 볼수없다.



**8.자연피해 예방, 방지자금을 1년에 한번만
납금한다.**

Bắc Ninh세국은 최근에 문서 1762/CT-TTHT를 2018/07/10일에 발표해서 자연피해 예방, 방지 자금의 납금을 안내한다.

본 문서에 따르면 노동자은 자연 피해 예방, 방지 자금의 납금을 해야하는 대상들이 오직 한번만 납금하고 기업이 오직 자기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만 수금한다. 노동자가 자기 거주 지방에 자연피해 예방, 방지 자금을 납금을 했으면 다른데 납금 하지않나도 된다.



9. 연결거래 있는 기업에 대한 차입이자의 비용을 공제된다.

2018/08/28일에 Binh Duong세국은 문서14605/CT-TT&HT호를 발표해서 차입금 이자 에 관련된 의령서 제20/2017/NĐ-CP 호 를 안내해 준다.

구체로, Binh Duong세국의 안내에 따라 기업이 재정보고 년도인 2017/01/01일부터 2017/12/31일까지 종료되면 기업은 의령 제20/2017/NĐ-CP호의 조정범위에 속한경우에 그 의령과 삽입된 양식 01처럼 연결관계와 거래의 정보를 반영하고 2017년 세금결재문서 와 같이 제출한다.

기간중 차입이자의 발생비용의 확정작업이 다음 원칙으로 진행된 연결거래에 대한 법인과세소득을 정할때 공제된다. 즉: 만약, 영업활동상에 총 순이익이 차입이자 비용, 기업의 기중 감가상각금과 함해서 (도한 EBITDA의 치수로 불러함) 0-zero보다 작으면 기업의 세금계산기중 차입이자비용의 전부를 법인소득세 확정시에 공제되지 않다.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Contact

본소식통은오직참고목적으로만사용한다

고객님께서 조세,외국인의활동,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된다 [Tax Hub](#)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大形 薫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满重弘 (Hiroshi Mitsushige)
Manage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9
E hiroshi.mitsushige@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唐牛 理任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